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370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유한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18. 5. 2.

판결 선고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29/9907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레등기소 1992. 12. 28. 접수 제62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29/9907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92. 12. 28. 접수 제624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2. 8. 원고의 대표이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1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C이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28.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된 다른 토지에 존재하므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하게 될 경우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근저당권이 잔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C은 피고의 E에 대한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그런데 E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C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28.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E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고, C이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C은 1992. 11. 18. E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② C은 같은 날 E에게 등기권리증 원본, 같은 날 본인이 발급받은 매도 위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에 인감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다.

③ E, F은 1993. 4. 3.경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생하면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1993년 제7621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④ E은 피고에게 1993. 11. 15. 2,100,000원, 1994. 7. 1. 3,000,000원, 1995. 5. 18. 4,000,000원, 1996. 3. 22. 150,000원, 2005. 9. 27. 1,500,000원, 2005. 11. 24. 1,000,000원, 2007. 1. 25. 2,000,000원, 2007. 7. 23. 20,000,000원, 2008. 9. 12. 2,000,000원, 2010. 1. 2. 400,000원, 2017. 8. 30. 1,000,000원, 2017. 9. 4.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2호증)에서도 C은 '피고가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설승원

별지